#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
# 기간제 근로자(사무 나급) 채용 공고

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은 아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30일
외교부장관

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| 채용직종 | 담당 업무 | 선발예정인원 | 근무예정기간 | 근무예정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간제근로자<br>(사무 나급) | 연말정산 업무보조<br>(상세 내용은 p.7 직무기술서 참고) | 3명 | 27.1월중.-27.3월초.<br>* 예정기간으로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| 운영지원담당관실 |

※ 이번 채용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.

## 2. 응시자격(자격 및 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: 원서 접수 마감일)

【 공통요건】

- **다음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**

**①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폑범죄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라.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*②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**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**

예시 :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**④「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」제24조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**

- **만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(2026.10.30.) 기준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규정상 정년(만 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**
- **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)**

## 【자격 및 우대 요건】

|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| |
|---|---|
| **자격 요건** | •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, 엑셀, 파워포인트의 전산 업무가 가능한 자<br>• 비서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, 엑셀, 파워포인트의 전산업무가 가능한자 |
| **우대 요건** | • 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(급여/연말정산/세무/회계) 실무 경력<br>- 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<br>• 관련 분야 자격증 (전산회계 1급 또는 2급, 전산세무 1급 또는 2급)<br>-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 배점<br>• 전산 업무 자격증 (컴퓨터활용능력 1급) |

**※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[판단기준일 : 원서접수마감일]**

※ (자격요건)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(2026.11.13.) 기준으로 판단
-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(2026.11.13.(금))을 기준으로 하며,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(전임근무의 경우 전부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)

※ (우대요건(근무경력)) 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 상근 근무 경력
-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며,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경력
- 경력의 계산은 상기 자격요건 경력의 계산을 준용

-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은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며(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,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경력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
  - 동아리, 학술연구, 프로젝트 등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험 사항은 불인정
- 자격증은 종류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대하여 차등배점 적용, 복수 항목에 해당하여도 합산하지 않고, 가장 점수가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

**【가점사항 】**

| 구분 | | 부가 점수 |
|---|---|---|
| 사회형평 가점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|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 |
|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| |
|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| |
|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|

※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가산점수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3%를 초과할 수 없음.)

## 3. 임용시 근무조건

○ 보수 : 월 2,207,520원 이상(2026년 기준, 세전)

※ 4대보험 가입,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외교부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※ 연봉월액은 '27년초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,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로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('26.5월)」에 따른 공정수당 지급 대상

○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09:00 ~ 18:00 근무 원칙

○ 근무지 :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(외교부)

## 4. 시험 방법

### 가. 서류전형

○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(소극적 서류전형)

※ 단,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(①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, ②자기소개서 허용 글자 수의 30%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, ③기타 ①~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)의 경우는 탈락 처리

○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와 가산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(적극적 서류전형)

※ 심사요소 : 자기소개서 및 우대요건 등

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

### 나. 면접전형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, 성실성,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5개 평정요소*를 상·중·하 계량화하여 평가, 불합격 기준**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동점자 발생 시 ①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②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

* 5개 평정요소 : ①공무직근로자로서 자세,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**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

## 5. 시험 일정

| 응시원서 접수 |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| 면접전형 |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|
|---|---|---|---|
| '26.10.30(금)-11.13(금) | 11.20(금) | 11.25(수) | 12.4(금) |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·연장 등 변경 가능

※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예정자 명단은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개별 통지 예정

※ 최종합격예정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 / 임용예정자의 자진 포기 또는 임용된 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면접전형 차순위 득점자(예비합격자)를 추가합격자로 결정

## 6. 응시원서 접수

○ 응시원서 : 본 공고문 하단에 첨부

○ 접수기간 : 2026.10.30.(금)~11.13.(금) 24:00

○ 접수방법 : 채용 담당자 **이메일(finance3@mofa.go.kr) 접수**

※ 접수마감일 24:00 접수분까지 인정

※ 제출 서류는 **1개의 pdf 파일**로 제출하며, 메일 제목은 **'지원자(홍길동)'** 표기

## 7. 제출 서류

1 **응시원서**(필수) ※ 자격요건 증빙서류(고등학교 졸업증명서) 첨부

2 **자기소개서**(필수) ※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3 **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**(필수)

4 **개인정보 관련 동의서**(필수)

5 **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**(필수)

6 **경력(재직)증명서**(해당자)

7 **우대요건 증빙자료**(해당자)

## 8. 유의사항

○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특정 인적사항(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적

조건 등) 기재시 채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해당자의 경우 영어권 외 해외 학위, 기타 증명서 등은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구비서류 미비,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 원서 및 제출 서류를 착오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고,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제출 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가능)

○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예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후보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채용 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내부 심의 및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.

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(공정채용 확인서)를 제출해야 하며,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.

○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, 재공고 후 전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담당자 메일(finance3@mofa.go.kr) 또는 연락처(02-2100-7812)로 문의 바랍니다.

# 직무기술서 기간제 근로자(사무 나급)

| 채용예정기관 | 채용예정부서 |
|---|---|
| 외교부 | 운영지원담당관실 |

| | |
|---|---|
| **주요 업무** | ○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 검토<br>○ 직원 연말정산 상담 및 안내<br>○ 증빙자료 확인 및 보완 안내<br>○ 연말정산 자료 정리 및 시스템 반영<br>○ 기타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서 부여하는 업무 |

| | |
|---|---|
| **필요 역량** | ○ 공직윤리(공정성,청렴성)·공직의식(책임감,사명감)·공복의식<br>○ 상황인식/판단력, 의사소통능력, 팀워크지향<br>○ 정보처리능력 |

| | |
|---|---|
| **필요 지식** | ○ 행정 분야 일반 지식<br>○ 연말정산 업무보조에 필요한 행정 처리 절차에 관한 지식 |

| **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** | |
|---|---|
| **자격요건** | ○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, 엑셀, 파워포인트의 전산 업무가 가능한 자<br>○ 비서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, 엑셀, 파워포인트의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 |
| **우대요건** | ○ 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(급여/연말정산/세무/회계) 실무경력<br>- 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<br>○ 관련 분야 자격증 (전산회계 1급 또는 2급, 전산세무 1급 또는 2급)<br>- 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 배점<br>○ 전산 업무 자격증 (컴퓨터활용능력 1급)<br>○ 사회적 배려 대상자(가점사항) |

# 응 시 원 서

※ 파란색 작성 지침은 삭제 후 제출

| 1. 공통사항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지원분야** | | 접수번호 | < 미기재 > |
| **성명** | (한글) | | |
| **연락처** | (본인휴대폰)<br>(비상연락처) | 전자우편 | |
| **생일** | < 심사위원에게 미제공(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) > * **생년은 미기재** | | |
| **주소** | < 심사위원에게 미제공(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) > | | |
| **응시 자격 여부** | 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, 엑셀, 파워포인트의 전산 업무가 가능한 자 | | |
| **우대 요건** | ☐ 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 분야(급여/연말정산/세무/회계) 실무 경력 (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)<br>☐ 관련 분야 자격증(전산회계 1급 또는 2급, 전산세무 1급 또는 2급) (자격증 종류에 따라 차등 배점)<br>☐ 전산 업무 자격증(컴퓨터활용능력1급)<br>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: ☐장애인 ☐기초생활 ☐한부모 ☐북한이탈주민<br><우대사항 중 해당사항에 모두 √ 표시> | | |

| 2. **우대사항**(해당시)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**실무경력** | **근무기관** | **근무기간** | **직위** | **담당 업무** |
| | | | | |
| **관련 분야 지격증** | **자격명** | | **응시일자** | **유효기간** |
| | | | | |
| **전산 업무 자격증** | **자격명** | | **응시일자** | **유효기간** |
| | | | | |

※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)
※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※ 응시 자격요건·우대요건 증빙서류(고등학교 졸업증명서/경력(재직)증명서/자격증/사회적배려대상자)는 응시원서에 첨부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# 자 기 소 개 서

성 명 :

※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(글자크기 15포인트, 줄간격 160%, 2매 이내)

※ 자기소개,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, 간접적으로 출신 지역, 학교명, 가족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(경력 기관은 기재 무관)

(예시)

① 지원동기 및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

② 연말정산·세무·급여 관련 업무 경험

③ 엑셀 등 전산 프로그램 활용 경험

④ 정확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

⑤ 주요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등

2026년 월 일

작 성 자 :

#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
| 성 명 | | 응시부처 | 외교부 |
|---|---|---|---|
| 생년월일 | . . . | 직종 및 직위 | 기간제 근로자(사무 나급) |

본인은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외교부가 **실시하는 경력, 학위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**합니다.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**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·활용하는 데 동의**합니다.

또한 본인이 서명·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**외교부장관** 귀하

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외교부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**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**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-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

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**[필수] 민감정보 수집·이용 내역**

|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 처리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

**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**[필수]**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.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 |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|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|

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**외교부장관 귀하**

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외교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임함에 있어, 규정 제24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폭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 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**외교부장관 귀하**

# 경력(재직) 증명서

※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(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)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(불분명할 경우 경력 불인정 가능)

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인적 사항 | 성 명 | | |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| 주 소 | | | | | | |
| 경력 사항 | 근무기간 | | 업체명 (근무처) | 직위 (직급) | 담당업무 | 근무형태 (전임/비전임) | 비고 |
| | 부터 | 까지 | | | | | |
| | '12.3.5 | '15.2.4 | | | | | |

| 상벌 사항 | 포 상 | | | 징 계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년월일 | 종 류 | 해당기관 | 년월일 | 종 류 | 해당기관 |
| | | | | | | |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| 발급자 | |
|---|---|
| 소속 | |
| 직위 | |
| 성명 | (인) |

증명기관명 :

주소 :

전화번호 :

사업자등록번호 :

대표자 : (인)